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1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공대호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9,912,9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013,612원, 선정자 C(이하 선정자 지위의 표시는 처음 특정하여 지칭한 후에는 생략한다)에게 13,013,612원, 선정자 D에게 10,058,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5.부터(이는 “2020. 6. 5.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 C, D 및 피고는 각각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E의 중개로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상호의 “주식회사” 부분은 처음 특정하여 지칭한 후에는 생략한다)로부터 주식회사 G이 시공한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 또는 E 명의의 계좌로 그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F의 대표이사는 “F가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보유의 아파트 분양권을 특별분양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고, C, D 및 피고는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위 각 분양대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년경 E 및 I협회를 상대로 위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2. 법원에서 “피고에게 E는 10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I협회는 E와 공동하여 그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I협회는 위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2019. 12. 12. 가집행선고가 부가된 위 판결의 정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도중인 2020. 5. 28.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으로 I협회의 우체국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I협회는 2020. 6. 2. 집행법원에 위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면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6. 3. 집행법원의 강제집행정지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20. 6. 4. 우체국에 위 예금채권의 추심을 요청하여 2020. 6. 5. I협회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50,432,443원을

송금받았고, 집행법원의 강제집행정지 통지서는 그 직후에 우체국에 송달되었으며, 그 당시 원고, C, D은 각각 2020년경 E, I협회를 상대로 위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이후 I협회는 2020. 8. 26. 피고와의 위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I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원고, C, D 및 피고 앞으로 61,975,038원을 공탁하였고, 그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C, D은 2020년경 제기한 위 각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원고는 2020. 11. 13. “E는 원고에게 258,76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C은 2020. 10. 23. “E는 C에게 258,76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D은 2020. 12. 2. “E는 D에게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각 판결에서 원고, C, D의 I협회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E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I협회는 공제기간에 발생한 E의 중개행위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그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총 보상한도액 1억 원의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공제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50,435,443원을 추심하고 I협회가 원고, C, D, 피고 앞으로 61,975,038원을 공탁하여 전부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에서 자유경쟁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등 참조).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 5.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I협회의 예금채권 50,432,443원을 추심함으로써 원고, C, D의 I협회에 대한 공제금 채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C, D은 위 공제금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C, D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등 참조), 피고는 I협회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2020. 6. 2.부터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그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나아갈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2020. 6. 3.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집행법원의 강제집행정지 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6. 4. 위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우체국에 위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요청하여 2020. 6. 5. 우체국으로부터 위 피압류채권 50,432,443원을 추심하였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반하는 위법한 강제집행임이 명백하다.

② 그 당시 피고는 E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고, I협회의 공제금 지급의무는 그 피해자 전체에 대하여 총 보상한도액 1억 원의 범위에서만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다른 피해자보다 먼저 공제금을 추심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이 I협회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공제금의 액수가 감소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이 추심행위에 나아갈 당시에는 이미 F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원고, C, D도 E, I협회를 상대로 위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I협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피해자들의 총 손해액에서 피고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총 보상한도액 1억 원을 안분한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I협회의 예금채권을 추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C, D은 I협회에 총 보상한도액 1억 원에서 피고가 추심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가 위법한 행위로 원고, C, D의 I협회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 C, D이 입은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각

9,912,97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2020. 6. 5. 우체국으로부터 50,432,443원을 추심하였으나, 그중 10,783,562원은 I협회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의무의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39,651,881원만이 총 보상한도액 1억 원에서 공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추심행위에 의하여 원고, C, D이 입은 손해는 I협회에 대한 공제금 채권 중 위와 같이 총 보상한도액에서 공제된 39,651,881원 부분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것에 따른 손해로 한정되어야 한다.

② 위 공제금 39,651,881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 C, D, 피고는 I협회에 자신에게 먼저 지급하거나 원고, C, D, 피고의 E에 대한 총 손해액에서 각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의 위법한 추심이 없었더라면 원고, C, D, 피고는 모두 I협회에 대하여 공제금으로 총 보상한도액 1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C, D이 위 공제금 39,651,881원 부분에 대한 권리의 행사기회를 상실한 것에 따른 손해는 피고의 위법한 추심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원고, C, D, 피고가 각각 I협회에 청구할 수 있었던 공제금의 합계액인 4억 원에서 원고, C, D이 청구할 수 있었던 공제금 각 1억 원의 비율로 위 공제금 39,651,881원을 안분한 금액인 각 9,912,970원($= 39,651,881원 \times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피고가 I협회로부터 추심한 50,435,443원과 I협회가 공탁한 61,975,038원의 합계액인 112,410,481원 전부에 대하여 원고, C, D, 피고의 E에 대한 총 손해액 822,524,000원(원고, C : 각 258,762,000원, D : 200,000,000원, 피고 : 105,000,000원)에서 각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원고, C : 각 35,363,783원, D : 27,333,059원, 피고 : 14,349,856원)만큼 분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위법하게 추심한 50,435,443원에서 피고에 대한 위 분배금 14,349,856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85,587원을 다시 원고, C, D의 E에 대한 총 손해액 717,524,000원에서 각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원고, C : 각 13,013,612원, D : 10,058,363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이는 앞서 본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C, D에게 각 9,912,9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20. 6. 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8.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선 정 자 명 단

1. A
2. C
3. D. 끝.

